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검사 면제 근거 마련 등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64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검사 면제 근거 마련 ·	2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11

I. 개요

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7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단서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검사 면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서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생략)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다만,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서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¹⁾에서는 제21조제1항²⁾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³⁾으로 정하는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② (생략)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작업장에서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4)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 9월 현재 축산물가공업은 4,163개, 식육포장처리업은 7,922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18,473개로 총 30,558개에 달하고 있는데,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 축산물가공업 등 현황 〉

('25. 9. 3. 기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계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3,540	224	399	7,922	18,473	30,558
4,16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가품질검사 현황 〉

자가품질 검사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계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자체	46	11	61	4	0	122
위탁	3,494	213	338	7,918	18,473	30,43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항목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⁵⁾을 적용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산출해보면, 포장육은 64,900원, 소시지는 394,400원, 치즈는 533,20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책정하는 수수료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5)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품목별 검사항목 및 검사 비용(예시) 〉

유형 (총생산량, 톤)	대표품목 (생산량, 톤)	검사항목 예시	검사비용(원)
식육가공품 (1,561,998)	양념육(비살균) (690,573)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83,000
	식육추출가공품 (비살균) (100,293)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57,700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	84,300
	소시지(멸균) (95,181)	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발효소시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94,400
유가공품 (2,239,679)	우유(살균) (1,058,353)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27,200
	농후발효유 (237,625)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73,400
	치즈 (83,295)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 보존료	533,200
알가공품 (160,620)	알가열제품(살균) (69,233)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17,000
	전란액(살균) (30,790)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17,000
포장육 (3,463,937)		(분쇄) 장출혈성 대장균	64,9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9조6)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우로서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검사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⁷⁾ 및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7조⁸⁾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포장육에 대한 검사는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업종별 검사 주기 〉

검사 업종	검사 대상		검사 주기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동물성유지류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개월마다 1회 이상
유가공업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조제유류,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참고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8)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사 업종	검사 대상		검사 주기
알가공업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분쇄에 한함)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에 한함)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경우 품목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영업장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와 필요한 경우 축산물 등에 대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품목별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물 등에 대해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 제19조를 근거로 매년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5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55건, 지방자치단체가 8,645건 등 총 1만 건의 수거검사를 진행할 예정임.

〈 2025년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 계획 〉

(단위: 건)

구 분	식육·포장육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합계
총계	1,823	1,140	4,330	2,290	417	10,000
식약처	255	490	350	180	80	1,355
지자체	1,568	650	3,980	2,110	337	8,64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의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 제4조⁹⁾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기본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고시)에서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항목([별표 1~3])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¹⁰⁾

□ 따라서,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서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가품질검사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10) [참고 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상수거비를 지급하고 있어 해당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할 경우, 수거대상 업체는 제품가에 상응하는 금액 보상과 자가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이중 혜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한국소비자연맹은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자가품질검사를 검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함.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 정부 수거·검사를 무상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필요

□ 한국소비자연맹:

- 정부 수거·검사 결과는 자가품질검사를 검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거·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자가품질검사 유지 필요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축산물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포상금)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 ----- ----- ----- ----- ----- ----- -----.
<신설>	1. 제4조제6항·제7항, 제7조제1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축산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부터 적용함.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9조¹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0조¹²⁾에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별표 3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의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50만원 이하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만원 이하

비 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고발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동일하나, 집행액은 2021년 410만원에서 2024년 215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6월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6건, 집행액은 85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

연도	예산액(천원)	집행액		
		건수(건)	금액(천원)	집행률(%)
2021	7,000	18	4,100	58.6
2022	7,000	77	4,205	60.1
2023	7,000	41	3,482	49.7
2024	7,000	42	2,150	30.7
2025. 6.	7,000	16	850	12.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에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현행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신고·고발 또는 검거 협조를 추가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의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령¹³⁾에서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관련 조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항·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

13)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다만,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축산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별도로 호로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국민의 직접 참여 및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4)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정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검사

- 1) 포장육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포장육의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 1)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1-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멸균 제품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1.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용돈지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원료우지, 원료돈지		산가, 산화방지제	
3-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매월 1회 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멸균 제품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 크로노박터,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장기용 조제유	매월 1회 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멸균 제품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1. 햄류	햄, 생 햄, 프레스햄	멸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생햄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생햄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4-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멸균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4-3. 베이컨류	베이컨류	멸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4-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멸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4-5.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멸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분쇄가공육 제품	멸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그 외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
	식육케이싱	멸균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4-6. 식육추출	식육추출 가공품	멸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가공품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타르색소
		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군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액상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
4-7. 식육간편 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5-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 제품, 피단	멸균제품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6-1. 우유류	우유, 환원유	멸균제품		산도,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2. 가공유류	강화우유	멸균제품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산균첨가우유	멸균제품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당분해우유	멸균제품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	멸균제품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3. 산양유	산양유	멸균제품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5. 버터유	버터유	멸균제품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6-6. 농축유류	농축우유	멸균제품	산도,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농축우유	멸균제품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7. 유크림류	유크림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크림	멸균제품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산가(발효제품 제외),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버터오일		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9. 치즈류	치즈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가공치즈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6-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1.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멸균제품 세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외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청단백분말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2. 유당	유당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 포장육		장출혈성 대장균(분쇄에 한함)

[별표 1의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항목(제5조 관련)

구 분	검 사 항 목
항생제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농약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별표 2]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검 사 항 목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말제품, 그 외 식품 중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를 제외한 식품에 한함),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경도(경도조절식품에 한함), 점도(경도 20,000 N/m ²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별표 3]

통·병조립 및 레토르트 식품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통·병조립식품	세균, 주석(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캔제품에 한함)
레토르트식품	세균, 타르색소